KPMG

Newsletter

Korea Tax Updates

세무조사시 자료제출의무 미이행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관련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 구체화

지난 3 월 입법된 국세기본법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음(국세기본법 제 85 조의 7 등). 신설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2025 년 9 월 15 일부터 시작되는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단, 같은 사유로 인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중복하여 부과할 수는 없음).

이를 위해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등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30 일 이상)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행기한 통지 이후에도 납세자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 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일 평균수입금액의 0.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단,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평균수입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 일당 500 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가능).

한편, 6 월 2 일 신설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은 위 이행강제금 제도의 내용을 구체화 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납세자가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30 일이 지난 후에도 장부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30 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함.

-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은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장부등을 전부 제출한 날(납세자가 장부등을 전부 제출하기 전에 세무조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종료된 날)의 전날까지로 하되, 만약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기간은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에서 제외됨.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이 중 개별기준에서는 납세자의 1 일 평균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1 일당 부과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요율을 해당 납세자의 1 일 평균수입금액의 0.1% ~ 0.2% 로 구간을 나누어 세분화함.

-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나,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 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현행 과태료 제도에서는 자료제출의무 미이행에 대한 최대 5 천만원까지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될 수 없는 반면, 새로 신설된 이행강제금은 기존 과태료와 다르게 자료제출의무 미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그에 따라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의 자료제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은 일반 과세처분의 불복절차에 따르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는 바, 향후 세무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가 적법하고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 중 국내구간의 영세율 적용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한 심판례

청구법인은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외 관계사들과 기본국제화물운송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입 화주들에게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관계사에게 제공한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국내 구간에서 제공한

운송용역 중 선불조건 거래(화물발송인이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쟁점국내운송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2 조 제 2 항 제 1 호는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을 영세율 대상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은 쟁점국내운송용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규정에 따른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일반세율 1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1) 관계사와 쟁점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화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바, 청구법인이 관계사와 함께 공동으로 ‘화주’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계약의 내용상 관계사로부터 쟁점국내운송용역을 위탁 내지 도급받은 것에 불과함
2) 화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최종 운송료를 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권한이 없고 쟁점국내운송용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과 계산’이 되지 않으며, 화주가 아닌 관계사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았으므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국제복합운송용역 계약을 수임하는 단계부터 화물의 운송에 소요되는 단가를 제시하는 등 청구법인과 관계사는 화주에 대하여 공동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글로벌 책임보험료를 배분하거나 영해구간의 이익을 배분하는 등 공동계약의 책임과 계산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 등을 항변하며 심판을 청구함

이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2 조 제 2 항 제 1 호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청구법인이 화주와 직접 계약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계약도 공동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고, 화주로부터 직접 운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함(조심 2024 서 4286, 2025.05.13.).

Keynote: 복합운송주선업에서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국내구간 운송용역의 영세율 처리에 대해 최근 과세관청에서는 영세율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조세심판원 역시 일관되게 납세자의 청구주장을 기각하고 뿐만 아니라(조심 2023 서 7730, 2023.12.26 등), 법원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음(수원고등법원 2024.02.14. 선고 2022 누 10081 판결, 이후 동 판결은 대법원 2024.6.27. 선고 2024 두 37954 판결로

심리불속행 확정됨). 다만 아직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유사 사례도 있는 만큼 추후 법원 판결 추이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Newly Issued Tax Interpretations

과세관청이 절차를 지연해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 생략은 허용되지 않음

사건 개요

원고는 2016. 12. 16. 서울 서초구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양도한 후, 1 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하였음.

이후 원고 주소지 소재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관할 세무서장(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정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고인 관할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21. 8. 3.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등을 이관 받음. 피고는 2022. 5. 2.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송달하고, 그로부터 불과 7 일밖에 경과하지 않은 2022.5.9.에 원고에게 2016 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 함.

쟁점

단순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3 개월 이내로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기본법」 제 81 조의 15 제 3 항 제 3 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은「국세기본법」제 81 조의 15 제 3 항 제 3 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 생략은 단순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3 개월 이내로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특히 과세관청의 과세절차 지연으로 인해 스스로 부과제척기간을 임박하게 만든 경우에는, 해당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함(대법원 2025.06.05. 선고 2025 두 33014 판결).

동 판결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납세자에게 과세 전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하거나 부당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장치임.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늦게 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경우, 이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은 과거부터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으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 두 911 판결 등), 이번 판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사전절차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한 판례로 평가됨. 향후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만료 임박을 이유로 적부심 절차를 생략하고자 할 경우 그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음.

제약사 반품 비용,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심판례

청구법인은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제약회사로, 매출 거래처들로부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의약품을 일정 기준에 따라 반품 받고 있었음. 이러한 반품은 제품의 유효기간, 품질 문제, 시장 상황 등 제약 유통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자사 내부 기준과 거래처 요청을 반영하여 반품을 허용하고 있었음.

과세관청은 해당 반품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의약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거래처에 대한 일종의 우대 행위로 보고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으로 과세처분을 하였음.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해당 반품이 자사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유통 관행이자 품질관리 및 영업활동의 일환이며, 실제로 환수된 제품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고, 금전이나 현물 제공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도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본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해당 반품거래가 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제약업계의 유통 특성과 품질관리 목적에서 비롯된 거래임을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반품받은 제품에 대해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환입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용 결정함(조심 2024 서 2795, 2025. 5. 27.).

Keynote: 의약품 반품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유통기한이나 품질관리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이를 접대비로 보기 어려우며, 실물 회수 및 폐기 처리 후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상 매출환입으로도 인정 가능함.

다만, 반품 기준은 내부 규정이나 거래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품이 영업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회의록, 내부 방침, 업계 관행 자료 등 증빙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함. 과거에 유사한 반품거래가 접대비로 처리된 적이 있다면, 최근 심판례에 비추어 경정청구 또는 향후 세무조사 대응 방안도 사전 검토해둘 필요가 있음.

특정매입 조정률의 오류를 이유로 한 익금조정 경정청구의 정당성 판단

특정매입계약(미판매 재고 반품 조건)에 따라 백화점 등에 제품을 공급한 청구법인은, 회계상과 법인세법상 수익 인식 기준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판매점에 출고된 재고 중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재고의 가액에 일정한 조정률(8.8%)을 적용해 수익 인식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왔음.

그러나 이후 판매점 전산시스템(EDI)상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산정한 결과, 조정률(8.8%)이 잘못 산정되어 결과적으로 익금이 과다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정률 산정의 기초 통계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이는 법인세법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법인세 경정을 청구함.

이에 대해 처분청은 회계처리 방식이 청구법인의 자율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과세표준 계산상 일관되게 적용된 조정률의 기초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함. 특히 조정률은 세법상 직접 규율된 항목이 아니며, 통계적 예측 기법에 기반한 조정 방식의 특성상 일부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의 오류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

본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판매점 전산시스템(EDI)에 따른 자료가 객관적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조정률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전에 산정되고 그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인식된 이상 사후적으로 조정률의 정확성을 문제 삼아 익금 누락을 주장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등의 사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조심 2023 서 7120, 2025.04.10.).

Keynote: 자체적으로 설정한 회계상 조정률이 사후적으로 부정확하더라도, 과세표준 계산상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적용된 경우에는 익금조정의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며, 통계적 추정에 기반한 회계처리의 한계에 대해서는 납세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시사함.

임대부동산 양도의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양도인이 근린생활시설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수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세액도 신고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해당여부 및 부정행위에 기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음.

양도인은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 당시 임대차계약의 승계, 영업보상금 지급, 포괄양수도 특약 기재 등이 이루어진 점에 근거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이상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포탈을 위한 위계나 은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행위도 아니라고 주장함.

조세심판원은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경영주체만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나 양수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개발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하나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았으며, 취득 직후 신탁등기를 설정하고 개발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등 임대사업을 승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다만, 조세심판원은 사업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 조세포탈 목적의 위계나 은닉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사업양수도의 특약사항이 있는 매매계약서가 거래당사자들의 의사와 다른 것이라거나 허위의 계약서를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사후에 임의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동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조심 2025 중 0671, 2025.05.28.).

Keynote: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 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서상의 문구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의 승계 여부, 양수인의 사용 목적, 사후 운영 실태 등 실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또한 단순한 문서 제출이나 특정한 세무처리 방식만으로는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제 3 자 보전 마일리지 및 임대매장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청구법인은 백화점 등 유통매장을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상품권, 마일리지, 제휴 브랜드 포인트 등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였고, 제휴사 또는 브랜드로부터 할인액을 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객에 대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함.

제 3 자로부터 보전받은 마일리지 등 할인액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2015 두 58959)을 근거로, 마일리지 출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1 조에 따라, 자기적립마일리지를 제외한 제 3 자적립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 중 제 3 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된 점에 비추어, 해당 마일리지등 할인액은 공급가엑에서 차감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또한, VIP 고객 등이 임대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제공한 할인액이 임대료에 대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임대매장 간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할인액을 임대료에서 직접 차감한다는 약정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를 판매촉진비로 계상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해당 할인액 역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조세심판원은 마일리지 및 제휴 할인에 대한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실질적인 대가관계 및 계약구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 개정 이후에는 제 3 자 보전액의 공급가액 포함이 명확히 규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조심 2024 서 5252, 2025.05.27.).

Keynote: 본 사안에서 청구법인은 2018 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법인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에누리 규정의 해석 및 대법원 판결 선례에 따라 쟁점 마일리지등 및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 3 자 보전 마일리지 등에 관하여 2018 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한 사례로 평가됨.

APA 결과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 증가 시 정산금의 귀속 및 세무처리

사후 정산 조항이 포함된 사업양수도 계약에서 사업양도인이 과거에 신청한 일방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의 결과에 따라 영업권 등 자산의 이전가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정산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당초 사업양수도 계약에 포함된 자산 양도대가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의 정산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반영하여야 함 (서면-2024-법규법인-4190, 2025.05.29.).

Keynote: 이미 종결된 양수도 거래에 대해 사후적으로 APA 결과로 발생하는 사후 거래 정산차액은 과거 거래 종결 시점이 아닌 정산금 수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해석 사례임.

연결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배제 내부용역거래 요건

2021 년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는 기업 간 내부 용역거래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되었는 바, 관련 요건들 중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이 전체 연결집단의 총세액 기준인지, 개별 법인 기준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였음. 동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국세청은 개별 연결법인이 아닌 전체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배제 요건에서 말하는 "용역 거래"에는 금전대여나 자산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서면-2023-법규법인-2133, 2025.5.26.).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저장·혼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지 여부

외국법인이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 저장하고, 국내 석유저장업체를 통해 혼합(블렌딩) 후 국외로 수출하는 거래를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해당 외국법인의 계약 체결, 대금 수령 등 실질적 사업활동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국내에는 상주 인력이나 고정된 사업시설이 없는 경우, 단순히 보세구역 내 저장 및 혼합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회신함(서면-2024-국제세원-4435. 2025.5.22.).

Keynote: 국세청은 유사한 사례에서 외국법인이 국내 소재 석유저장탱크에 석유를 저장 보관하다가 단순 혼합한 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해당 국내 석유저장탱크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고정사업장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음(사전-2024-법규국조-0560, 2024.11.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실질적 사업방침 결정에 따른 특수관계 성립 여부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다목은 특수관계의 한 유형으로서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를 정하고 있음. 또한 국조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항 제 3 호는 사업방침 결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를 다섯가지 방법에 의한 경우로 열거하고 있음.

여기서 쟁점은 상기 시행령에서 열거되지 않은 방법에 따라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사업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임.

이에 관하여 국세청은 상기 국조법상 특수관계의 판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항 제 3 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 것이라고 함(서면-2025-국제세원-0819, 2025.05.22.).

Keynote: 국조법상 사업방침의 실질적 결정에 따른 특수관계 성립은 동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Upcoming Tax Reporting Reminder

-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제출 사전통지서**: 2025 년 6 월 30 일까지 제출 (해당 사업연도가 12 월말 종료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 제출)

-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2025 년 6 월 30 일까지 제출 (해당 사업연도가 12 월말 종료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 제출)

-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및 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명세서 제출 의무**: 2025 년 10 월 15 일까지 제출

International Tax Team – Key Contacts

Oh, Sang Bum	sangbumoh@kr.kpmg.com	02-2112-0721
Lee, Sung Wook	sungwooklee@kr.kpmg.com	02-2112-0946
Cho, Sang Hyun	sanghyuncho@kr.kpmg.com	02-2112-7687
Suh, Yu Jin	yujinsuh@kr.kpmg.com	02-2112-0930
Song, Hyung Woo	hyungwoosong@kr.kpmg.com	02-2112-0275
Min, Woo Kee	wmin@kr.kpmg.com	02-2112-6886
Kang, Sung Won	kang22@kr.kpmg.com	02-2112-6771
Ryu, Su Seok	suseokryu@kr.kpmg.com	02-2112-6787
Park, Seong Kyun	seongkyunpark@kr.kpmg.com	02-2112-0455

home.kpmg/socialmedia

Privacy | Leg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